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에서 함께 일할 요양 보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북부종합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9명	-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업무 등 담당 - 세종시 북부권역일대(조치원읍 및 면지역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남부종합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3명	-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업무 등 담당 - 세종시 남부권역일대(행정동일대 및 금남면, 장군면 지역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2 근무 조건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북부종합 재가센터	요양 보호사	- (채용방식) 시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임용 후 이용자 연계 상황에 따라 결정 - (근무장소) 세종시 북부지역일대(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 (보수기준) 시급제(시간당 단가 10,667원) *세종시생활임금 적용되며, 종합재가센터 운영내규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남부종합 재가센터	요양 보호사	- (채용방식) 시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임용 후 이용자 연계 상황에 따라 결정 - (근무장소) 세종시 남부지역일대(세종시 관내 행정동 및 금남면, 장군면) - (보수기준) 시급제(시간당 단가 10,667원) *세종시생활임금 적용되며, 종합재가센터 운영내규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직영운영기관인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순환보직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 채용기준

○ 공통기준

- (기 준 일) 공고일 현재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 단, 정년(60세)기준을 상회할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관계법령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1)

○ (자격기준)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채용분야	응시자격
북부종합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남부종합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각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구분	대상	가점	증빙서류
거주지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자	1점	주민등록 초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5점	장애인 증명서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채용분 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 부문별 4명 이상을 채용 하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법령에 따라 단점의 5~10% *중복시 유리한 내용 한가지만 적용	

* 우대사항 가점은 중복 적용되며 면접전형 백분율 환산점에 최종 합산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을 근거로 적격 여부 판단
- 합격자 발표: '21. 12. 24.(금)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 입사지원서 상 응시자격 적격 여부 미증명 시 불합격

□ 인성검사

-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방법) '21. 12. 25.(토) 07:00 ~ 12. 26.(일) 17:00, 온라인 검사
-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인력뱅크 솔루션 활용(SPAT-C 인성검사, 240문항)

※ 해당기간 내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 (평가활용) 면접시험의 평가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2. 1. 5.(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정

※ 면접시험 예정 장소: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세종시 한누리대로 2107)

※ 응시 및 면접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접시간은 공고문 참조

○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미참여자 면접시험 응시불가)

○ (평가기준) 심층면접을 통한 직무이해도, 전문지식, 의사전달력, 태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위원 종합평정(가점 제외)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 (최종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시험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1순위 : 최종선발시 장애인, 지역인재(세종시), 청년(34세 이하)순으로 선발

2순위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가)직원으로서 해당 직무이해도, 나)전문지식과 업무 수행 응용능력, 다)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

○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의 사정으로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기간) '21. 12. 9.(목) 09:00 부터 ~ 12. 21.(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sj.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제출서류 및 인정기준)

제출 서류		인정 기준
공통 사항 (필수)	입사지원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자기소개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자격증 사본	◦ 온라인 파일 업로드(응시자격기준 확인용) ※ 공고일 전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등이 완료된 자격만 인정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 지원자의 기본응시자격 및 우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자격 증명·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 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거부 시 응시 불가
해당자에 한함 (파일 업로드)	주민등록초본	◦ 세종시 거주 가점 및 병역사항 확인용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인정 , 거주지변동사항 및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채용우대 및 가점관련 증명서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 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증명 서류의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으로,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6 채용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1. 12. 9.(목)~12. 21.(화)	
지원서 접수	'21. 12. 9.(목)~12. 21.(화) 17:00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21. 12. 24.(금)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 사이트 공고
인성검사	'21. 12. 25.(토) 07:00 ~ 12. 26.(일) 17:00	온라인 검사

면접시험	'22. 1. 5.(화)	상세내용 재단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2. 1. 14.(금)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 사이트 공고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2. 1. 17.(월) ~ 1. 19.(수)	임용등록서류 제출 상세내용 개별 안내
임용예정일	'22. 1. 20.(목) 예정 *분야별 임용예정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지할 예정입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7: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자격기준을 위해 제시해야하는 내용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최종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예정자의 제출한 증빙 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응시자 본인의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반환하며(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접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부터 시험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사장 입구에서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면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면접관이 응시자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한 후 바로 재착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채용 담당자

※ 지원자는 채용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셔서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채용담당자(☎044-850-8163)로 문의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공통]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3. 채용신체검사결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각 사업의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종합재가센터 응시자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14, 제39조의17,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요양보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9.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10.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중인 자